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가.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의거 기록물의 체계적·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를 의무화함에 따라

나. 기록자치 실현 및 기록관 내실화를 위해서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전문요원을 확보코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직급별 정원 조정

ㅇ 일반직(6급 상당이하) : **현행 388명 → 조정 387명(본청, △1)**

ㅇ 연구사(전체) : **현행 2명 → 조정 3명(증1)**

- 기록연구사 : 1명 (본청, 증1)

4. 관련법령

가.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

나. 지방자체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5. 검토의견

□ 제출자, 개정이유, 주요내용, 관련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.

○ 공공기관이 생산한 기록물 중 가치있는 기록을 선별·보존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, 지식강국의 도약기반 마련을 위하여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」에서는 자격을 갖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토록 규정하고 있는 있고 부칙에 경과조치로 우리군의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 배치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.

○ 따라서 「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」 제2조(정원의 총수) 및 제 4조(직급별 정원)에 의거 일반직(6급 상당이하) 현행 388명에서 감 1명 하여 연구사 현 2명에서 3명으로 증 1명 하고자 함으로 그 법적근거가 타당하고 정원의 책정에 하자가 없으므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.

○ 참고로 현 경북도 1명 시군에서 7명이 채용·배치되어 있습니다.

○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〔별표 3〕

성주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(제4조관련)

기관별 / 직급별	총 계	본 청	의회사무과	직속기관	사업소	읍 면
총계	539	263	12	96	14	154
정무직 계	1	1				
군수	1	1				
일반직계	416	219	7	48	8	134
4급	1	1				
4~5급	3	2				
5급	25	11	3	0	1	10
6급 상당 이하 계	387	205	4	47	7	124
별정직 계	18	2	1	12	3	0
6급상당 이하 계	18	2	1	12	3	
연구사 계	3	3	0	0	0	0
학예연구사	1	1				
임업연구사	1	1				
기록연구사	1	1				
지도직 계	28	0	0	28	0	0
지도관	3			3		
지도사	25			25		
기능직 계	73	38	4	8	3	20